

[별표 10]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23조관련)

1. 영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원료·부원료 등을 바꾸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변경 전에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영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수위탁은 제20조에 따라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에 한한다.

다.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위탁처리할 폐수의 일일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눈금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판·인쇄, 자동식사진처리, X-Ray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과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20L 이상의 합성수지용기의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cm, 세로 4cm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의 경우에는 황색바탕에 검정색으로 "현상폐수"라고, 정착액의 경우에는 녹색바탕에 검정색으로 "정착폐수"라고 각각 써야 한다. 다만,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오염물질농도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인수를 하는 때에는 폐수수탁처리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바.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폐업·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시정지 등의 사항에 대하여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새로운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가. 폐수(위탁처리하는 폐수 및 지정된 배출해역에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자가 배출하는 폐수를 제외한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 등으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와 공정 중에 순환 재이용하다가 재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폐수 등 액상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 다.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폐수처리상황 등의 실적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자와 폐수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2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한다).
- 마. 제2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